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1

비영리 社團法人 孝敬

효경복지공동체

제1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6조(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등 규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그 등급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22.06.20.개정).

1. 주·야간보호는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한다. 단, 이 외의 경우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정한 자, 공단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다.
2.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정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호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3. 이외의 경우라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시설에서 정한 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본 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22.06.20.개정).

1. 주·야간보호서비스 1일 이용정원은 65명이나 인지등급 6명의 추가이용이 가능하다.
2.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본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제6조 규정에 따른 모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소개 및 급여 종류 홍보를 통한 모집
2.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 및 각종 자조단체 등 홍보활동을 통한 모집
3.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
4. 전단지나 현수막 제작, 지정 게시대 신청 및 설치를 통한 지역사회 홍보
5. 공단 홈페이지와 협회 또는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한 모집
6.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은 그 급여의 종류와 내용, 이용절차,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급여의 종류와 내용(24.11.27.개정)

1. 송영지원 2. 신체활동지원 3. 간호 및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 등의 기능향상지원
4. 영양관리지원 5. 사회적응향상지원 6. 인지활동 및 정서지원 7. 여가지원 및 기타 지원 등
8.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 9. 치매관리지원(인지기능향상지원)

- 제1항, 제5항의 급여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 급여의 종류와 내용,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이용 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사전방문 → ③ 사정회의 → ④ 서비스 계약체결 → ⑤ 서비스 제공 → ⑥ 사후관리

※ 이용 비용

1. 식재료비 1식 2,500원(조/석식은 2,500원씩 추가, 식사 대용은 실비 적용)
2. 간식비 오전/오후 각 500원
3. 의료비(병원 진료비 및 약값)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 규정은 수급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계약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주(야)간보호서비스에 있어서는 이용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22.06.20. 개정).

1. 이용계약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 제10068호) 또는「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한다. 2. 계약기간 및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등 포함 3. 수급자의 권리(수급자의 선택 존중)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5. 전염성 질환 등에 따른 격리 및 신체구속 동의서 6.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건강검진 결과서 등)

③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성년후견인 등과의 계약도 유효하다. 단, 법적 권한이 없는 보호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 전원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급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⑤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시 시설은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시설과 수급자는 그 확인 받은 서류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전항에 따른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이내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인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입소·이용료 등 비용의 부담)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③ 재가급여인 주·야간보호사업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본인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이나, 식재료비 및 간식비는 실비로 한다.(22.06.20. 개정)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시설은 매년 수급자 등이 부담해야 할 월이용료 내지 비용 부담액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년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25일전까지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급자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5.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동의와 협력	6. 기타 적법한 절차와 요청에 따른 동의와 협력, 용인 등

② 이 외의 수급자 등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보호자, 보증인, 성년후견인 등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이 외의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계약체결 및 그 내용에 대한 확인, 권리와 의무의 이행
2. 시설의 면접·상담·간담회 및 수급자 면접요구에 따른 참여
3. 시설의 서비스 제공이나 그 제공과정 등에 대한 확인 및 개선요구
4. 본인부담액 등의 납부
5. 급여제공지침 등에서 정한 수급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신원인수인에게 협조·요청을 구한 사항
7. 기타 적법한 절차와 요청에 따른 동의와 협력, 용인 등

제20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할 때(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해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이 외의 계약해지 및 해제에 대해서는 「급여제공지침」, 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의 벗 孝敬

2026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단위:원)

이용시간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일수가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본인부담금	일반(15%)	6,720	5,810	5,360	5,120	4,870
		감경(9%)	3,760	3,480	3,220	3,070	2,920
		감경(6%)	2,510	2,320	2,140	2,050	1,950
		기초수급	0	0	0	0	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일수가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본인부담금	일반(15%)	8,410	7,790	7,190	6,940	6,700
		감경(9%)	5,040	4,670	4,310	4,170	4,020
		감경(6%)	3,360	3,110	2,880	2,780	2,680
		기초수급	0	0	0	0	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일수가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본인부담금	일반(15%)	10,460	9,690	8,950	8,700	8,450
		감경(9%)	6,270	5,810	5,370	5,220	5,070
		감경(6%)	4,180	3,870	3,580	3,480	3,380
		기초수급	0	0	0	0	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0%추가산정	3,015,480	2,797,440	1,833,840	1,691,640	1,450,680	-

○ 비급여 항목 (단위:원)

	식비(점심)	간식비(오전·오후)	1일 식·간식 총금액
1일	2,500	1,000	3,500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①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②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단위:원)

	식비(점심, 저녁)	간식비(오전·오후)	1일 총금액
1일	2,500	1,000	3,500

2) 이 . 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①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②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 주간보호 20일 이용시 비용(본인부담금+식·간식비, 8~10시간 이용기준) (단위:원)

비율 / 등급	일반(15%)	감경(9%)	감경(6%)
3등급	(8,950+3,500) × 20일	(5,370+3,500) × 20일	(3,470+3,500) × 20일
	249,000	177,400	139,400
4등급	(8,700+3,500) × 20일	(5,220+3,500) × 20일	(3,380+3,500) × 20일
	244,000	174,400	137,600
5등급	(8,450+3,500) × 20일	(5,070+3,500) × 20일	(3,280+3,500) × 20일
	239,000	171,400	135,600
인지지원	(8,450+3,500) × 12일	(5,070+3,500) × 12일	(3,280+3,500) × 12일
	143,400	102,840	81,360